

#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

##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22-14
----------	-------

제안연월일 : 2022. 1. 20.  
제안자 : 의회운영위원장

### 1. 제안이유

「지방자치법」 전부개정에 따라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법 조문을 변경 정비하고, 정책지원관 배치와 직무범위, 운영방법에 관한 사항을 반영하고자 함.

### 2. 주요내용

- 가. 인용조문의 변경(안 제1조)
- 나. 정책지원관 운영에 대한 근거 내용 신설(안 제5조)

### 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: 「지방자치법」 제102조, 제103조
- 나. 기타
  - 1) 개정조례안: 붙임
  - 2) 신·구조문대비표: 붙임

##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 중 “제90조 및 제91조”를 “제102조 및 제103조”로 한다.

제5조 및 제6조를 각각 제6조 및 제7조로 하고, 제5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5조(정책지원관) ① 사무국에 정책지원관을 둔다.

② 정책지원관은 소관 사무에 대하여 지방의회의원의 지휘를 받으며, 다음 각호의 사무를 분장한다.

1. 조례 제정·개폐, 예산·결산 심의 등 의회의 의결사항과 관련된 의정활동 및 자료 수집·조사·분석 지원
2. 의원의 서류제출 요구서 작성 및 관련 자료 취합·분석 지원
3.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 지원
4. 의원의 구정 질의서 작성 및 관련 자료 취합·분석 지원
5. 의원의 공청회·세미나·토론회 등 개최, 자료 작성, 참석 등 지원
6. 기타 지방자치법 제47조부터 제52조와 관련된 자료 수집·분석·조사 및 의정활동 지원

③ 정책지원관은 제2항에 따른 사무 이외에 일반적인 사무에 대하여는 사무국장의 지휘·감독을 받는다.

## 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지방자치법」 제90조 및 제91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사무기구와 지방공무원인 사무직원의 정수 및 분장사무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</p> <p><u>&lt;신 설&gt;</u></p>	<p>제1조(목적) -----            --- 제102조 및 제103조-----            -----            -----            -----            -----            -----            --.</p> <p>제5조(정책지원관) ① 사무국에 정책지원관을 둔다.</p> <p>② 정책지원관은 소관 사무에 대하여 지방의회의원의 지휘를 받으며, 다음 각호의 사무를 분장한다.</p> <p>1. 조례 제정·개폐, 예산·결산 심의 등 의회의 의결사항과 관련된 의정활동 및 자료 수집·분석 지원</p> <p>2. 의원의 서류제출 요구서 작성 및 관련 자료 취합·분석 지원</p> <p>3.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 지원</p> <p>4. 의원의 구정 질의서 작성 및 관련 자료 취합·분석 지원</p> <p>5. 의원의 공청회·세미나·토론</p>

회 등 개최, 자료 작성, 참석  
등 지원

6. 기타 지방자치법 제47조부터  
제52조와 관련된 자료 수집·  
분석·조사 및 의정활동 지원

③ 정책지원관은 제2항에 따른  
사무 이외에 일반적인 사무에  
대하여는 사무국장의 지휘·감독  
을 받는다.

제5조 · 제6조 (생략)

제6조 · 제7조 (현행 제5조 및 제6  
조와 같음)

# 관 련 법 령

## □ 지방자치법

제102조(사무처 등의 설치) ① 시·도의회에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무처를 둘 수 있으며, 사무처에는 사무처장과 직원을 둔다.

② 시·군 및 자치구의회의에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무국이나 사무과를 둘 수 있으며, 사무국·사무과에는 사무국장 또는 사무과장과 직원을 둘 수 있다.

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사무처장·사무국장·사무과장 및 직원(이하 제103조, 제104조 및 제118조에서 “사무직원”이라 한다)은 지방공무원으로 보한다.

제103조(사무직원의 정원과 임면 등) ① 지방의회에 두는 사무직원의 수는 인건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조례로 정한다.

② 지방의회의 의장은 지방의회 사무직원을 지휘·감독하고 법령과 조례·의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임면·교육·훈련·복무·징계 등에 관한 사항을 처리한다.